

[별표 11] <개정 2006.12.18>

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·관리기준(제46조관련)

1.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2.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개선 등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운영자가 부득이하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때에는 처리시설의 개선사유, 개선기간, 개선하려는 내용, 개선기간 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기재한 개선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처리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.
3. 처리시설의 가동시간, 폐수방류량, 약품투입량, 관리·운영자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실대로 매일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4.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5. 처리시설의 관리·운영자는 방류수수질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.
  - 가.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류수수질검사를 월 2회 이상 실시하되, 2,000 m<sup>3</sup>/일 이상 규모의 시설은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  - 나. 방류수의 수질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.
6.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그 수질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간 3회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관 등에 의한 기술진단을 받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그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가. 「환경관리공단법」에 따른 환경관리공단
  - 나. 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수질관리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
  - 다. 「기술사법」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수질관리 분야 기술사